

【별표 4】

근무성적평정 감점기준

(제29조 제3항 관련)

감 점 항 목		점 수	
		성비위	
징계처분 등	정직	3점	최하위 '가'등급 1회
	감봉	2점	직전 등급 보다
	견책	1점	낮은 등급 1회
	경고 1회	0.2점	
	주의 3회 이상	0.2점	
복 무	무단결근(1일당)	0.3점	
	무단이석(1회 3시간이상)	0.2점	
	지각(월 3회이상)	0.2점	
불 친 절	불친절신고(YELLOW 카드)가 3회 이상 접수·불친절로 확인된 자	0.3점	